

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제정 2009. 6. 19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대구대학교 총장후보선출규정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총장후보 선거의 공정한 사무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선관위”라 한다)의 조직과 직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선관위의 사무소는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에 둔다.

제3조(구성 및 조직) ① 선관위는 각 단과대학 교수회가 추천한 교원 각 1인과 직원대표가 추천한 직원 약간 명을 교수회 의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. 직원의 참여인원수는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②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직무)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총장후보 선거(이하 “선거”라 한다) 업무의 관할
2. 「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」 등 총장후보 선거관련 규정의 해석
3. 선거에 관한 사무협조 의뢰
4. 투·개표 관리
5.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판정
6.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

제5조(위원장·부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 및 의무) ① 위원의 임기는 선관위가 해체될 때까지로 한다.

② 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7조(회의) ① 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표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8조(사무협조) ① 선관위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우선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제반 경비) 선거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대구대학교가 부담한다.

제10조(시행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선거 관리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결한 날(2009년 6월 19일)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